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사유에 ‘정당한 사유’ 추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2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제출
2. 제 안 일 : 2024. 10. 16.
3. 회 부 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인 ‘3개월 이상의 휴업’과 공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인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의 휴업’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_____ _____ _____.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u>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u>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u> _____ _____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u>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u> 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 업한 경우	7. <u>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u> <u>사유 없이</u>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적 취소사유),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필요적 취소사유).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과제 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허가·지정·신고·등록 등의 취소사유를 전수조사 한 뒤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인데,

취소사유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유에 ‘정당한 사유¹⁾ 없이’를 추가하는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내용으로 정비되는 법률은 총 25개가 발의²⁾되었고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법률안은 동 개정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4)임.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이나 영업 미개시를 이유로 지정·등록을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면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 처분을 개선하고 지정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기공사협회가 지정되어 있고 관련 규정 입법 이후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2) 정부가 제출한 제재처분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정당한 사유’ 관련 정부 제출 개정안 목록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개교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교육부
2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부가통신사업의 폐업을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7조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3조제3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4조제3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조·판매업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국방부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 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산림이용진 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 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39조제1 항제2호)	행정안전부
7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 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 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 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제1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8	식물방역법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 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9	초지법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 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2조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 등 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 의6제1항제5호)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1조제4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12	전기공사업법	·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1조제2호) ·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8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5조제3항제3호)	환경부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7조제4호 및 제5호)	환경부
16	수도법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63조제1항제1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63조제1항제2호)	환경부
17	폐기물관리법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7조의2제2항제2호)	환경부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제16조의6제1항제5호)	환경부
19	환경보건법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3조의2제5항제4호)	환경부
2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제4항제2호)	여성가족부
21	아이돌봄 지원법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여성가족부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3항제2호)	해양수산부

개정안	제명	개정 내용	소관부처
2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7조의2제2호)	해양수산부
24	항만운송사업법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호)	해양수산부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14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13조제2항제3호)	금융위원회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제49조제2항제5호)	금융위원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